

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

(이연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1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3.

발의의원 : 이연숙 의원,

서도원 의원, 양은숙 의원

1. 제안이유

최근 아동 유괴 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,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 근거하여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,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나. 아동보호에 대한 책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~5조)

마.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유지·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7~8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를 따른다.

2. “아동보호구역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법 제32조제1항 및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지정하여 그곳에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구역을 말한다.

가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「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

나.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

제3조(책무 등) ①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

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아동의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,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 추진)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.

1.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

2.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·보수

3.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을 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5조(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)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영 제2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고, 그 조사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

경우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,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및 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6조(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) 군수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이하 이 조에서 “영상정보처리기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영 제30조에 따라 유지·관리 또는 설치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(시설물 설치)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(교통안전시설, 보도 및 도로부속물 등을 말한다)에 준하여 설치할

수 있다.

제9조(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)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, 관할 경찰서장,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아동복지법(법률)」(2024.2.6. 일부개정, 2024.8.7. 시행)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2조(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,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
4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

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
□ 「아동복지법 시행령(대통령령)」(2025.1.1. 일부개정, 2024.10.22. 시행)

제29조(아동보호구역의 지정)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)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“공원관리청”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.

1. 공원관리청이 특별시장·광역시장인 경우: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아동보호 구역의 지정 요청

2. 공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인 경우: 아동보호 구역 직접 지정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.

1.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

2.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

3.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.

1.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: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

2.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: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

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,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,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

제30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및 관리 등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해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고장·노후화 등의 이유로 교체·수리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③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